

「(재)구미문화재단 출연안」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 문화예술사업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구미문화재단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원 지원 필요
- (재)구미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, 사업비 등 출연금을 2025 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출연 개요

- 1) 기 관 명: (재)구미문화재단
- 2) 소 재 지: 구미시 송정대로 120
- 3) 조직/구성: 4팀 26명(현원: 3팀 18명)
- 4) 출연금액: 6,000백만원
- 5) 근 거
 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 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20조
 -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20조
 - 「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○ 주요 사업

1) 창작기반 활성화 사업

- 예술창작 지원,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
- 구미시 문화예술인 DB 구축 사업
- 구미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사업
- 예술-기업 연계 지원, 문화다양성 지원 사업

2)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

- 지역문화 정책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
- 시민주도형 문화활동 지원 사업
- 지역 문화자원 발굴 및 콘텐츠화 사업
- 생활문화 기반 조성 지원 및 활성화 사업

3) 문화예술공간 운영

- 구미영상미디어센터, 구미생활문화센터 등 운영

○ 출연의 필요성

- 1) 구미시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성 강화와 창의적인 문화정책 및 문화예술 사업 발굴·육성을 위해 설립한 구미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 지원
- 2) 구미시의 문화예술 경쟁력 제고와 자생력 있는 문화예술생태계 조성·지속적인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, 사업비 등 재원 지원 필요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20조
-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20조
- 「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출연안은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1)에 의거하여 (재)구미문화재단의 출연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문화 재단의 운영으로 지역 기반 문화 활성화 정책의 전문적 추진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 문화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추진 사업과 예산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단의 투명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관련 부서의 철저한 관리·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또한 부서에서는 구미문화재단의 추진 사업, 인력 관리 방안 및 이관된 시설 관리 계획 등 재단의 운영 방향을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과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1)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